

2005. 2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
-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	2005. 2. 7	2005. 2.14	2005. 2.19	2005. 2.19	지역개발과장
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"	"	"	"	"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2004. 6. 1. 「재난관리법」이 폐지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공포되어 동법 제11조에서는 조례로 시·군·구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「충주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」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함(안 제2조)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자격을 정함(안 제3조)
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(안 제6조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(안 제9조)

나.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안전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정함(안 제2조)
- 자문단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3조)
-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관계서류·도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함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관리법」이 폐지되고 새로운 「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」(법률 제7188호, 2004.3.11. 공포 2004.6.1. 시행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
-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린 시·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조례 준칙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나 필요성,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,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관리법」이 폐지되고 새로운 「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」(법률 제7188호, 2004.3.11. 공포 2004.6.1. 시행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
-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 나 필요성,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,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

▶ 질의 : 위원회의 구성이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?

○답변 : 위원회 구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(집행기관)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임.

▶ 질의 : 안전관리위원회는 간사 1인만(담당과장)을 두고, 서기(업무담당)를 두지 않는 이유는?

○답변 : 담당과장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.

나.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“없음”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: 원안가결
나.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- 가.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1부
나.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